

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4-31호

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(등기)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(송달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4년 3월 28일

방송통신사무소장

1. 공고사유: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2. 공고기간: 2024. 03. 28. ~ 2024. 04. 10.
3. 공시송달 대상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
1	토가디앤씨(주)	180111-1066455	0178220274100003324	₩6,562,500	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93-1 (당감동, 에스티빌딩)
2	(주)대영전기 정보산업	180111-1089267	0178210274100004973	₩4,852,500	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46, 2층 (대저1동)
3	정성훈	1974.○.20.	0178240274100000017	₩1,033,600	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명봉거남로 ○○
4	박재섭	1966.○.09.	0178200274100000436	₩2,450,000	경상북도 안동시 제봉3길 ○○
5	김래영	1966.○.01.	0178200274100004671	₩18,000,000	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○○
6	이순영	1964.○.08.	0178200274100004493	₩4,301,100	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352번길 ○○
7	박경환	1976.○.20.	0178200274100003551	₩6,690,600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남로 8길 ○○
8	황도영	1960.○.13.	0178200274100004522	₩8,850,000	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부인길 ○○
9	장영환	1956.○.19.	0178200274100003545	₩31,860,000	경상북도 구미시 금오시장로 3길 ○○
10	최용석	1968.○.25.	0178200274100003546	₩31,860,000	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로 175번길 ○○
11	윤애라	1969.○.24.	0178200274100000445	₩31,860,000	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서부로 ○○
12	홍옥선	1980.○.29.	0178200274100003583	₩31,860,000	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신촌로 ○○

4. 문의: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(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, 605호, ☎ 051-967-1204)
5. 공고내용: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6. 납부방법: 인터넷지로(giro.or.kr) 또는 NTR POPCON(ntrpopcon.go.kr), 모바일앱(NTR POPCON)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(수납기관 :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)
7. 가산금 및 증가산금 등 안내
 - 가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%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,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.2% 증가산금(重加算金)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.
 - 나. 증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, 가산금 3%와 증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%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.
 - 다.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,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국세징수법」 제24조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.
 - 라. 또한,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,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